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법안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7월 27 일

청 원 인

성 명 : 서영은

주 소 : 경기도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서영은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성명 : 서영은
건명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법안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2년 7월 27일

소개의견

청원인 ‘서영은’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소속 문화위원회 청소년의원입니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홍보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진흥법을 개정하여 CRM(창의체험자원지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창의적체험활동진흥법) 학생들의 권리 신장과 교육권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①(직무) 각 시, 도 교육청은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개발·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창의체험자원지도(CRM :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역 내 인적 물적 활용 자료)’의 마련을 권고하여 각 학교에 배부 및 홈페이지 기재 등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마련 및 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소 개 의 원

서영은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청원인 '서영은'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소속 문화위원회 청소년의원입니다.

현재 교과부가 제시한 창의·인성 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정부의 지원 하에 점차 보급되고 있는 교육 방안입니다. 2009년에 개정된 교육안 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현 정부와 교과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추진되고 입시체제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홍보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진흥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창의적체험활동진흥법) 학생들의 권리 신장과 교육권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①(직무) 각 시, 도 교육청은 창의체험자원지도(CRM)를 개발·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시,도 교육청에 '창의체험자원지도(CRM :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역 내 인적 물적 활용 자료)'의 마련을 권고하여 각 학교에 배부 및 홈페이지 기재 등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마련 및 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청원인 성명 : 서영은

청원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신매탄위브하늘채A

청원인 전화번호 : 휴대전화:010-3341-0242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